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- 379호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벤처투자법')에 따른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11월 8일 공고한 「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8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일부개정

1. 개정 이유

-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제재처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-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벤처투자법 개정사항 반영
- 위반횟수 및 시정여부에 따른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정비

3. 시행일

- 2026년 7월 1일

붙임. 「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」 일부개정 1부.